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4 - 76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의2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초구역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을 고시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 월 31 일

우정사업본부장

국가기초구역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안 행정예고

1. 개편 이유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구역번호 5자리를 우편번호로 사용

2. 주요 내용

읍·면·동 및 지배원별 담당구역을 기준으로 부여된 기존 6자리 우편번호를 도로, 하천, 철도 등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구역번호로 개편

3. 의견 제출

「우편번호 개편」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우편팀

o 전 화 : 02-2195-1571, 1573 (Fax : 02-2195-1539)

o E-mail : postalcode@koreapost.go.kr

o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 (서린동)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우편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편번호 개편」고시 개정안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 - 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의2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우편번호 개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우정사업본부장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

1. 개편목적

o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구역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

《 관련 법조항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o 국가기초구역은 통계, 소방, 치안, 우편 등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사용되어 정보 공유를 통한 국가차원의 효율성 증대 예상

2. 개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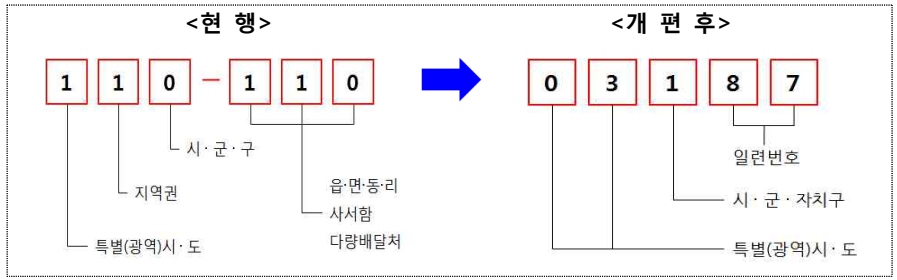
o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기준으로 부여된 기존 6자리 우편번호를 도로, 하천, 철도 등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구역번호로 개편

- 5자리 중 앞 3자리로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구별

-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구성

< 새우편번호 구성체계 >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광화문우체국



o 1개의 주소에는 반드시 1개의 우편번호만 부여

- 다량배달처 및 사서함 등에 대해서도 별도 우편번호 미부여

※ 다량배달처 및 사서함의 경우, 건물 혹은 시설이 위치한 기초구역의 새우편번호(구역번호)를 사용

o 새우편번호 개수 : 34,349개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새우편번호 34,061개)

- 새우편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 현황 : 6,030,394건

※ 2014. 10. 27. 기준이며, 지역별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3. 새우편번호 사용·변경 등

o 새우편번호는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o 새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기존 6자리 우편번호와 5자리 새우편번호는 번호체계와 의미하는 지역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병행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시행일 : 2015. 8. 1.

5. 참고사항

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도로명주소-지번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의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www.jus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